서면계약
필수
불공정은
철수

예술, 불공정과 이별하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예술,
불공정과
이별하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 소책자는 예술인의
예술 창작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와 함께
예방·대처·개선해 나가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예술
계약은 필수
불공정은 철수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 창작의 열정으로 진입한 예술인의 '계약 관계'를 산업이나 상업 시스템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대가 미지급, 불공정 계약 강요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예술계와 협의하여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보급해왔고, '서면계약 작성 및 필요적 기재 사항 명시 의무화'(2016. 5 예술인복지법 개정)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서면계약 작성을 위반한 경우 조사권과 시정명령권, 계약서 보존 의무'(2019. 12 예술인복지법 개정)를 신설하여 제재 권한도 마련했습니다.

재단은 불공정행위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장르별 표준계약서의 보급을 지속하여 문화예술계 공정성 회복과 예술인의 권리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Contents
목차

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사업 알아보기

1장 서면계약 체결하기 08
2장 불공정행위 알아보기 10
3장 '예술인신문고' 이용하기 18
4장 일의 정당한 대가 받기 26
5장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30
6장 권익보호 교육 받기 38
7장 성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 받기 40

예술인 복지재단 지원 사업 알아보기

사업

- **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준비금 지원 (지원금 300만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지원금 300만원)
- **예술인 파견 지원-예술로 사업**
  -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으로 기업/기관과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4~6개월 활동, 매월 활동비 지급)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 가입 및 기타 사무업무 대행
  - 산재보험료의 50~90% 지원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50% 지원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예술인의 고액 의료비 자기부담금 (1인 최대 500만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 전세자금 대출(최대 8천만원)

지원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예술인 자녀대상 돌봄센터 2개소 운영
- **예술인신문고**
  - 불공정 계약, 수익분배 거부/지연 등 불공정행위
  - 상담/신고/조사/조정/소송지원 등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 장관 고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홍보 등
  - 저작권 및 계약 실무, 노무, 세무 교육
- **예술인 심리상담**
  - 개인상담(심리검사, 최대 12회 상담)
  - 집단상담, 심리교육 등
- **예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 피해신고상담 접수 및 피해 연계 지원(법률/의료/심리상담)
  -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패스(공연, 전시, 생활 속 할인 등)
  - 행복주택, 어린이집 입소 등에 증빙으로 활용

chapter >>

1 서면계약 체결하기

1.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예술 분야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예술활동의 종류

- **창작활동**
  독창적인 예술적 결과물을 만드는 일
- **실연활동**
  연기·가창·연주·무용 등
- **기술지원 활동**
  연극이나 영화 스태프 등

업(業)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예술활동을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함을 이름

예술인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자신이 한 예술활동을 증명하면 예술인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2. 서면계약 의무화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계약 당사자 000는 000에게
작업 내용 000000을
계약 기간 00.00 ~ 00.00 까지 수행하기로 하고
계약 금액 0,000원을 대가로 000에게
대가 지급일 00.00일까지 지급받기로 한다.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업무 ·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 갱신 ·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계약일 0000년 00월 00일

계약 발주자 000 (서명)　　계약 상대자 000 (서명)

문화예술기획업자

예술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불공정행위의 금지)」

※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예술인복지법 제4조 3항을 참조
(더 알아보기 31p)

서면계약 < 불공정행위 차단 < 공정한 창작환경

서면계약을 하면 불공정행위와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 계약서를 근거로 예술인복지법 불공정행위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분쟁 시 계약서가 있다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예술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 12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복지법에 정한 불공정행위
2. 불공정행위의 사례

〈예술계 불공정행위 유형〉

〈예술분야별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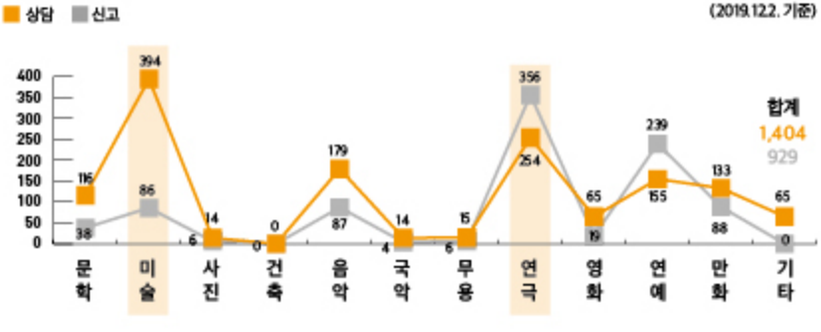

1. 예술인복지법에 정한 불공정행위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예술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예술인이 불공정한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하거나, 예술인이 **특정 문화예술기획업자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해주어야 할 계약서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적정한 수익배분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제적 착취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 활동의 발전 기반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예술창작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로 예술창작 활동의 발전 기반을 해치며 **예술인의 권익과 정체성을 손상하게 됩니다.**

4) 예술인의 정보 부당이용·제공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창작 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런 행위를 하면 예술인은 애써 노력해서 만든 아이디어를 빼앗기게 되고 결국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 활동의 기반을 해치게 됩니다.

2. 불공정행위의 사례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사례 ① = 구입 강요

"클래식 음악 연주자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제가 받을 보수의 일부를 티켓으로 지급 받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원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쪽 일을 하면서 오케스트라 협연 출연료를 티켓으로 받는 경우를 종종 보았어요."

"대중음악 공연을 하는 밴드입니다. 저희에게 티켓 판매를 할당하고 그만큼을 출연료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당했어요."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또는 임금·용역 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술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구입 강요'의 불공정행위입니다.

사례 ② = 이익 제공 강요

"기획사에서 차기작을 같이 하게 해줄 테니 이번 작품의 사례비를 깎아서 계약하자고 강요했어요."

"정전으로 손해가 생겼는데 대관 계약에 그런 비용과 책임을 임차인만 부담하고 공연장 운영자는 면책 받도록 계약되어 있었어요."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자신을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입니다.

사례 ③ =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가수입니다. 소속사가 10년 기한의 전속 계약*을 맺게 했어요. 더 나은 조건이나 상황을 찾을 수 없는 일명 노예 계약이에요."

"시나리오 작업 계약을 하는데 완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투자 완료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배타조건부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참고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 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④ =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연극배우인데 공연 한 회당 출연료가 말도 안 되게 낮게 책정되었어요."

"저의 경우는 출연료에 대한 협의가 없이, 공연 이후에 예상치 못한 낮은 출연료를 지급 받았어요."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⑤ = 불이익 계약 강요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한데 저에게 작업을 의뢰한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자신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해 놓았어요."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획사의 해석에 따르라는 조항이 있어요."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앞의 네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⑥ =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

"출판사가 계약서 상 명시된 삽화 작업 외의 작업을 부리하게 요구해요."

"배우인데 극단 공연에는 출연하지 못 하면서 외부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2) 수익배분 지연·제한·거부 행위

사례 ⑦ = 수익배분 지연

"배우입니다. 드라마 제작사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언제 지급할지 알 수가 없어요."

"공연 기술 스태프인데 공연 제작사에서 준다고 한 임금을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⑧ = 수익배분 제한

"대가를 받고 보니 예상보다 적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의 동의 없이 회사 운영 경비와 대표의 개인 경비를 공제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 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⑨ = 수익배분 거부

"드라마를 촬영했어요. 그런데 드라마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요."

"공연을 하고 나서 공연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75.7%"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함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2014년 ~ 2019년 12월까지 신고 접수된 총 929건의 불공정 행위 중 702건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건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한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의 불공정행위 규정에 따라 '예술인신문고'에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3장 예술인신문고 이용하기** 자세한 내용 참고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불공정행위가 밝혀지면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통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단에서는 수익배분 거부 등의 행위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 후 소송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4장 일의 정당한 대가 받기**로 이어집니다.

이때 서면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면 구두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데(양 당사자 간의 통화 녹취록이나 SNS 메시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서면계약서만 있다면 명쾌한 증명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5장 표준계약서 활용하기**로 이어집니다.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사례 ⑩ = 부당한 방해

"제작자가 출연자인 저에게 성희롱과 모욕을 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겠어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창작 활동과 관계 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⑪ = 부당한 지시·간섭

"부대 스태프입니다. 공연장 운영자가 다음 공연의 무대장치 설치 때문이라면서 제가 하는 공연의 무대장치를 어떻게 할지 일방적으로 지시했어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창작 활동과 관계 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사례 ⑫ =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제 아이디어가 담긴 시놉시스를 제작자와 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놓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저의 출연료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노출했어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 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chapter >>

3 예술인신문고 이용하기

문화예술기획업자와 예술인 사이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면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술인신문고'를 두고 불공정행위를 신고·조사·시정하고 있습니다.

1. 예술인신문고 절차
2.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한눈에 보는 예술인 신문고〉

사전 상담	- 각 협단체 신고 창구 - 재단을 통한 상담
1.신고/접수 협단체·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방문, 온라인 신고 상담 -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02-3668-0200)
2.사실 조사 협단체·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신고 내용 확인, 기초 사실 관계 조사, 자료 요구 - 피신고인이 비협조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 개입, 출석 조사 실시 및 자료 제출 요구 -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사실 조사 후 조사보고서 작성,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3.위원회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조사보고서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 조정
4.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 피신고인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 - 종류: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중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소송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 비용 지원(1인당 최대 2백만원)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5% 초과인 자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지원 검토

1. 예술인신문고 절차

신고/접수

예술인의 신고

불공정행위 제재 절차가 시작되려면 예술인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언론 보도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파악으로 알려진 불공정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조치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계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을 정부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라면 예술인신문고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상 직업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예술활동증명'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예술활동증명 신청 전이라면 반드시 신고 후라도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신고 방법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하여** 인터넷 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술인신문고 메일(sinmungo@kawf.kr)**을 통하여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부록]의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불공정행위 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신고할 수도 있고, 해당 분야 협회나 단체를 통해 신고서 작성을 도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창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란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충 처리 종합지원 시스템"

〈예술인신문고 - 분야별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처〉

KBAU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방송실연 / ☎02-784-3411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방송기술 / ☎ 1833-8261

방송작가유니온
방송창작 / ☎ 02-6956-0050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KOREA SINGERS ASSOCIATION
대중음악 / ☎ 02-780-2783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연극 / ☎02-744-8045, 02-765-7500

새찬공동집PD협회
방송연출 / ☎02-3219-6493

Korea Musicians' Union
대중음악 / ☎ 070-8162-0908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KOREA DANCE ASSOCIATION
무용 / ☎ 02-744-8066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
뮤지컬 / ☎ 02-765-5598

한국만화가협회
만화 / ☎ 02-757-8485

영화인신문고
영상산업종사자 고충처리신고센터
영화 / ☎ 02-2272-1505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무용 / ☎02-720-620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체 장르 / ☎02-3668-0200

※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실 조사 및 소송 지원. 단,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인신문고 자체 지원

사실 조사

사실 설명과 자료 제출

사실 조사는 신고 사건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어떤 경과를 거쳤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해당 사실이 불공정행위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기 전, 사건 자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정확한지 한쪽 주장에 불과한지 따져보고, 문제 되는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야 그에 맞는 적합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사건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며 원칙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예술인은 신고 당사자로서 사건 내막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신고인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사실 조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신고인 즉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예술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진실 파악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기획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 배분 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조사의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의 매출과 정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이 사실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예술인복지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규정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에 관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문화예술기획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이 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만으로 응하지 않으면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석 요구

예술인복지법은 사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조사는 신고인의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문화예술기획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사실 조사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 절차를 종결합니다. 단,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공정행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법률, 공정거래, 노무관계, 회계, 문화예술 등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을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불공정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정조치 전 조정 권고

불공정행위 제도의 목적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통해서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분쟁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분쟁 조정이 사건의 해결에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위원이나 문화예술 전문가로 지정된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분쟁 당사자인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분쟁 당사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조정안을 받아들여 확정한 합의안을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공정행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시정조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시정명령

1) 시정조치

시정조치 전 사건 종결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어도 시정조치가 불필요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스스로 시정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인 문화예술기획업자가 해산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조치의 내용

위 경우를 제외하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정조치의 내용은 불공정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문제가 된 불공정행위를 중지하라고 할 수도 있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계약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해서 시정조치를 명령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위에서 예시한 것이 아닌 내용도 가능하며 시정조치는 반드시 1개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시정조치를 함께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권고를 수락할 경우

시정조치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를 것을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수락하면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입니다. 수락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미리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정명령서 송달

시정조치의 마지막 단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서를 작성한 후에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송달하고 신고인인 예술인에게는 그 요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은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첫째,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초 위반 시의 과태료는 3백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예술인별로 각기 성립하는 사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부과됩니다. 한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여러 배우에게 출연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각기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각각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면 과태료도 각각 따로따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기획업자가 한 작품에서 여러 명의 출연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도 이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재정 지원 중단과 배제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서 정한 재정지원에는 영화발전기금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중단"이란 이미 받고 있던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의미이며, "배제"란 신규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술계의 현실을 볼 때 정부의 재정 지원 중지 방안은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강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예술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중지는 예술인복지법 2차 개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 재정 지원이 중지됩니다.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예술인복지법」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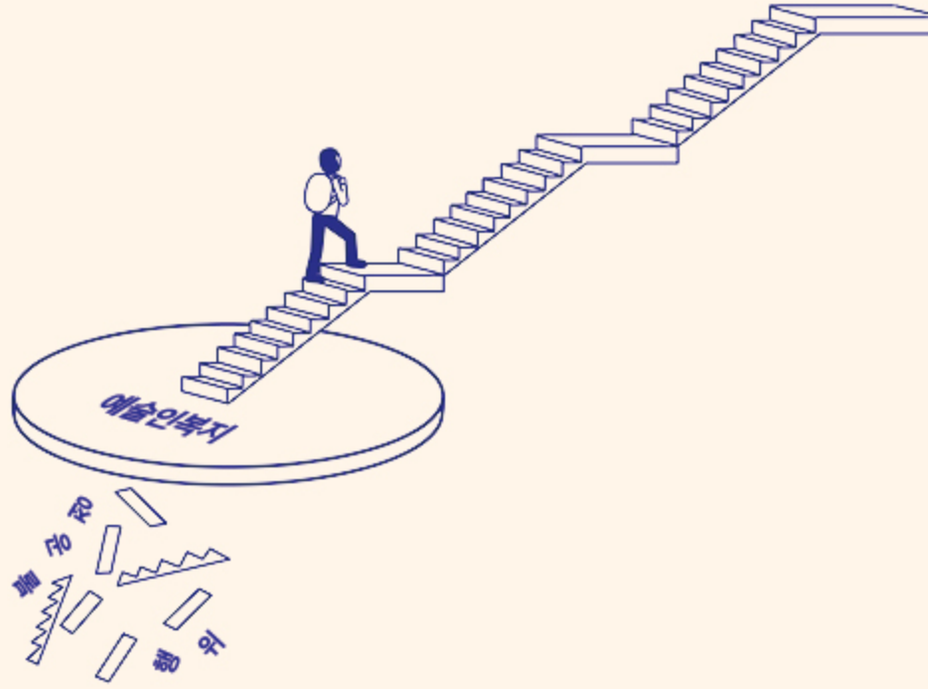

chapter >>

4 일의 정당한 대가 받기

근로자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술인의 경우는 「예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진행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제37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술인의 일의 대가는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 제1항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4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 중 제2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시 처분을 받습니다. 즉,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하면 재단에서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민사소송과 미지급 금원의 회수를 지원합니다.

1. 「예술인복지법」으로 대처와 해결
2.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예술인

〈예술인과 근로자의 법 적용〉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vs	근로자 「근로기준법」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위반 사항	임금체불행위/ 금품미청산 행위
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처리 기관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지청)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미시정 시 제재	시정권고 불이행 시 형사 처벌
확정 판결 → 강제 집행 (가집행)	해결방안 민사 소송	확정 판결 → 강제 집행 (가집행)
지급 대상 ×	체당금	지급 대상 ○

*체당금이란 국가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
* 근로자인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신고 절차를 우선 활용할 수 있음

1. 「예술인복지법」으로 대처와 해결

1)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에게 '신고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신문고 담당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가 미지급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을 조치함
(시정명령이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니 ○월 ○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신고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2) 소송 지원

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소송을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위촉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비,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도 재단이 지원
(단, 민사소송을 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법인 명의(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가 없음.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 재산을 파악해 놓거나 혹은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알아두는 등 관련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됨. 예를 들어, 통장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기 때문)

2.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예술인

1)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안내

'예술인신문고'에 대가 미지급 신고 시,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예술인의 경우 신고인에게 선택권 부여. 노동부 체불 임금 번제 제도를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음

2) 신고 절차 진행

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은 '성북구 노동권익센터'(근로자 대상 무료 법률구조기관)와 사건을 협력하여 진행하며, 공인노무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진정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음(고용노동부의 진정 사건 처리 기한 : 통상적으로 2개월 소요)

3) 고용노동부에 의해 체불 금품으로 확정될 경우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장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음

4) 근로자성이 인정된 예술인의 예

- 영화 스태프, 보조출연, 대역배우의 근로자성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음
- 뮤지컬 등 공연 기술 스태프의 경우 행정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음(영화 스태프의 경우 임금체불 형사사건 관련 대법원 확정 사례)
- 뮤지컬(주연, 앙상블, 단역 등) 배우 등 실연자의 경우 기획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서 형식이 근로계약과 다르더라도 공연 준비 및 실연 과정에서 제작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chapter >>

5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예술 분야에서는 산업화 이전의 스승과 도제, 선배와 후배라는 정서적 연대가 현대까지 지속된 이유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업자가 예술인의 창작물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거나, 독점 계약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예술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 귀속 문제 등 문화예술 분야에 **특수한 권리 관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서면계약 의무화'를 강화하였고, 분야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1. 서면계약 체결의 의무 강화
2. 표준계약서의 기능과 유형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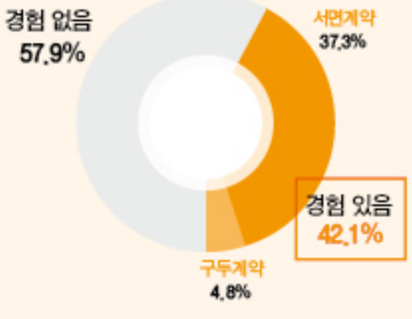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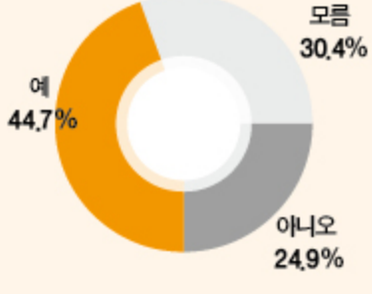

서면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

자료 예술인실태조사 2018 문화체육관광부

〈서면계약의 효과〉

1. 서면계약 체결의 의무 강화 (2020년 6월부터 시행)

1) 내용

- ㅇ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 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 ㅇ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보존 의무(3년) 부여
- ㅇ 구두계약 관행 근절과 서면계약의 정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

2)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운영

- ㅇ 예술인신문고를 통한 계약 관련 상담과 불공정행위 신고
- ㅇ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문화예술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가 예술인으로부터 노무, 용역 제공을 받기로 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됨

3) 실태조사

- ㅇ 예술인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기획 조사
  - 서면계약 체결률이 현저히 낮은 장르(미술, 방송 등)부터
  - 홍보 기간 경과 후 조사 및 신고 조치 실시

4)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 계약 체결 시 : 계약 체결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계약서 검토 및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필수적 기재사항 확인 등을 검토
- 문제 발생 시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의무 기재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서로 '예술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예술인 신문고'의 서면계약 신고 창구에 신고 가능

5) 서면계약의 필수적 기재 사항과 확인 사항

① 계약 금액
- 총액, 지급 방식, 시기 확인

② 계약 기간 · 갱신 ·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필요한 경우 예술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확인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저작재산권 귀속 여부, 2차 저작물 작성권, 계약 상대방의 콘텐츠 사용 범위, 크레딧 기재 방식 확인

④ 업무 ·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중간 결과물 및 완성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점, 계약 상대방의 검수 의무와 절차 확인

⑤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계약 대상 콘텐츠의 사용과 재사용에 대한 수익 분배율 및 분배 시기 확인

⑥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관할 법원은 가까운 지역인지 확인

⑦ 기타
- 계약 효력 발생일 확인

2. 표준계약서의 기능과 유형

1) 기능

- 예술계 각 분야별로 계약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맞는 계약 내용을 기본 구조로 하여 필수적 사항들을 기재
- 특정 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 관계에 맞춰 계약서의 표준 양식, 합리적 기준, 계약서 작성의 편리성 제공
- 계약 관계의 이해도를 높여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고 공정한 예술 계약의 토대와 규범을 정립
- 사회 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

2) 표준계약서의 유형

- **노무 제공형** : 영화, 공연, 방송 등 종합예술 저작물의 완성을 위해 복수의 스태프들이 제작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 공연예술 분야의 기술지원 계약, 방송영상 프로그램이나 영화 스태프의 근로계약이 이 분류에 해당
- **저작권 이용형** : 예술인이 독립적으로 완성한 창작물을 거래하기 위하여 창작물의 저작권을 화랑, 출판사 등에 위탁·이용 허락·양도하는 계약
- **기타 유형** : 예술인 간의 공동 저작 계약, 예술활동 전반의 기획과 관리를 위한 매니지먼트사나 에이전시와의 전속 계약, 영화 분야의 투자 계약이나 상영 계약 등 특수한 형태의 계약

예술인의 계약은
출연, 창작, 용역, 전속, 위탁, 집필, 투자, 하도급, 근로.....

아직도 이런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비교하여 내 계약서 다시 보기!

-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한다'?**
  저작권을 일괄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예를 들어 출판사와 인세가 아닌 매절 계약을 할 때 원저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 표준계약서의 저작권 관련 계약 조항과 비교하여 수정할 것!
-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뭐든 '일체'라는 표현은 조심하자. 예를 들면 '영업상 비밀에 대한 정보를 경쟁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식으로 무엇을, 누구에게로 범위를 정할 것!
- **예술인에게만 과도한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는가?**
  예술인의 결과물이 늦어질 경우에 대한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면,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일의 대가를 늦게 줄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불미스러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는 등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처럼.
- **연대 책임보다는 각자 책임으로**
  '공동 작업자들이 연대해서 손해 발생에 대해 배상해야 된다.'는 문구는 다시 점검해야 된다. 각자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만 지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삭제!

〈분야별 표준계약서와 계약 당사자 예시〉

공연예술

작가	표준창작계약서	극단·제작사
출연자	표준출연계약서	극단·제작사
기술지원스텝	표준근로계약서	극단·제작사
기술지원스텝	표준용역계약서	극단·제작사

미술

작가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화랑
작가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화랑
작가	판매위탁계약서	화랑
소장자	판매위탁계약서	화랑
매수인	매매계약서	화랑
매수인	매매계약서	작가
작가	전시계약서	미술관
독립 전시기획자	전시기획계약서	미술관
전시기획사	대관계약서	미술관
작가	모델계약서	모델
작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설계사·건축주

방송

PD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작사·매체
제작사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매체
스태프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사
스태프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작사
스태프	표준 업무위탁계약서	제작사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작사

영화

감독	영화 근로표준계약서(시간급 용)	제작사
감독	영화 근로표준계약서(포괄임금용)	제작사
시나리오작가	표준계약서(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제작사
시나리오작가	표준계약서(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제작사
시나리오작가	표준계약서(표준 각본 계약서)	제작사
시나리오작가	표준계약서(표준 각색 계약서)	제작사
제작사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 영화 상영 기본계약서	상영관
제작사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 개별 상영 계약서	상영관
제작사	영화 투자 표준계약서	투자사

저작권

작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출판사·제작사·플랫폼
작가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출판사·제작사·플랫폼
작가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출판사·제작사·플랫폼
작가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출판사·제작사·플랫폼

출판

작가	출판권 설정계약서	출판사
작가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사
작가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사
작가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	출판사
작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사
작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출판사
작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출판사·에이전시

만화

작가	출판계약서	출판사
작가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플랫폼
작가	웹툰 연재계약서	플랫폼
작가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저작 재산권 위임계약서)	제작사·플랫폼
작가	공동 저작 계약서	작가
작가	기획만화계약서	작가·제작사·플랫폼출판사

대중예술

가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소속사·기획사·매니지먼트사
가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방송사·제작사
배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소속사·기획사·매니지먼트사
배우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방송사·제작사
연습생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소속사·기획사·매니지먼트사
연습생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소속사·기획사·매니지먼트사

애니메이션

작가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매체
제작사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투자사
작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제작사
작곡가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제작사

문제 발생 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 환경과 법, 제도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지원 대상

· 현업 종사자(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관련 협단체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 기타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이 필요한 사업체 등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내용: 예술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및 계약 시 유의 사항, 표준계약서 등 내용
일정: 정기 교육(상세 일정 별도 공지)
상/하반기에 각 1회의 정기 교육을 진행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 개최
찾아가는 교육(상시)
신청: 협·단체, 유관기관 등 요청 시 해당 분야 예술인 맞춤형 특강 개최 지원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 교육

내용: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성인지 감수성 등
강사: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여성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만화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 분야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전문가풀 활용한 강사 추천 및 매칭
일정: 찾아가는 교육(상시)
신청: 협·단체, 유관기관 등 요청 시 해당 분야 예술인 맞춤형 특강 개최 지원

예비 예술인 대상 특강 지원

내용:
- 예비 예술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공유
- 예비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특강
- 예비 예술인을 위한 노동 인권 및 노동법 특강
- 예비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신청: 대학에서 재단으로 특강 신청 후, 협의를 통해 공동 개최 형식으로 진행
강사: 변호사, 저작권 전문가, 노무 전문가, 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 현장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 성폭력 예방 교육의 경우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만화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 분야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전문가풀 활용한 강사 추천 및 매칭
강의 시간: 1회, 2시간
* 신청 기관 및 실제 요구에 따라 강의 내용 및 형식은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음

온라인 교육

내용: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1차시] 저작물과 저작권
[2차시]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3차시]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4차시] 문화예술 계약
[5차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시 대응 방안
수강 방법:
강좌 홈페이지(http://kawfartist.khcu.ac.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무료)

chapter >>

7 성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 받기

예술계 내의 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와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피해 지원 절차〉

1.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 보장	전화 상담 즉시 지원	전화 : 02-3668-0266 상담 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시)
	온라인 상담 지원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비공개 게시판을 통한 피해 사실 접수 - 이메일 상담 신청 with@kawf.kr 양식 다운로드 - 7일 이내 회신을 통해 필요한 지원 안내 및 연계
	방문 상담 지원	예약 후 재단 내 마련된 상담실에서 심리상담사와 직접 상담 진행
2.지원 검토		내부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원 검토
3.지원	법률 지원	피해 상담 접수 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대응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 필요시, 컨설턴트 변호사를 통한 상담 지원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심급별 지원: 신청 사건 120만원, 인지대·송달료 50만 원 실비 지원 등 1인 최대 500만 원)
	심리상담 지원	피해 상담 접수 후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 기관 연계 전문 상담 지원(상담 12회 및 검사 비용 전액)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요된 비용 지원 (1인 최대 500만원)
	관련 전문기관 연계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4.종료		만족도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권고 배경 중에서 (2020. 2. 25.)

"문화예술계에는 폐쇄적인 인맥 구조와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 형태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아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출연, 창작, 용역, 전속, 위탁, 집필, 투자, 하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방지와 대응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표준계약서는 형사 처벌 대상인 성범죄만을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았고, 성희롱이 포함될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예술활동을 지속하면서 성희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분쟁 해결의 조정기구로 포함하는 등 피해자가 **예술활동을 지속하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부록]

불공정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관련부서 담당자	
	사업 내용 또는 영위 업종				
불공정 행위 유형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구입 강요, 이익 제공 강요,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대가 지급 강요, 불이익 계약 강요) ☐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행위				
신고 내용					
증거 자료	☐ 있음 (☛ 신고 내용의 증명을 위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없음				
신고인 신분 공개 동의 여부	☐ 공개 ☐ 비공개 ☐ 사건 조치 후 공개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술, 불공정과 이별하기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정희섭
기획·편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플래닛씨
초판 발행일	2020년 5월 13일
홈페이지	www.kawf.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전화	02-3668-0200
팩스	02-3668-0299
제작	디오에드
그림	최영구
디자인	조훈희, 김기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2층
TEL 02.3668.0200 FAX 02.3668.029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oreanartists.kr